

북카프카스 지역의 피의 복수와 아다트 관습법*

丁世眞**

I. 서론	IV 피의 복수 사건과 아다트 기능
II. 피의 복수와 관련된 일반적 범주	V. 아다트 예시와 법정 심리
III. 북카프카스 사회에서의 아다트-샤리아 관계 및 아다트 기록	VI. 결론

한글초록

본고는 아다트라는 전통적 관습법에서 명시된 다양한 형벌, 화해의 수단 등 법적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서술되었다. 특히 배상의 수단을 통한 화해의 내용이 피의 복수의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피의 복수는 북카프카스 민족에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피의 복수는 카프카스 민족의 일반법인 관습법에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정한 법적인 토대에 기초해 있었다. 본 논고는 북카프카스의 피의 복수의 일반적 범주, 북카프카스 사회에서의 아다트의 기록과 전승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피의 복수 사건과 아다트 기능에 관한 내용 및 북카프카스 사회에서의 아다트 법정 심리와 아다트와 관련된 다양한 예시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본 논고는 북카프카스 지역의 아다트와 관련된 피의 복수에 관한 내용을 ‘복수’ 그 자체의 관점보다는 아다트에 제시된 배상의 형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피의 복수는 기본적으로 20세기 이전 북카프카스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관습을 이해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이러한 차원에서 본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기한 부분은 아다트에서 규정하는 피의 복수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주제어 : 북카프카스, 아다트, 피의 복수, 체첸, 다게스탄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2264).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부교수, jsjstar2@hanmail.net

DOI: 10.21196/aprc.42.1.201805.007

I. 서론

북카프카스 민족의 전통적 행위에 있어서 피의 복수(blood revenge; кровная месть)는 살인, 상해, 강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혹은 친족이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족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되갚아주는 징벌 수단을 의미하였다. 북카프카스 소수 민족의 피의 복수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용서와 화해의 변증적 방식을 중심으로 논증한 바가 있다.¹⁾ 피의 복수는 기본적으로 혈족 간에 전승된 혈족 간 복수전과는 다른 형태이다. 피의 복수는 얼핏 본다면, 세대 간에 전승되어 지속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체첸 민족처럼 북카프카스 민족 중에서 명예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까지 피의 복수가 전승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피의 복수가 영원히 지속되어 복수가 끊임없이 전승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의 복수는 기본적으로 명예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즉 자신의 명예, 혹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행위로 이루어졌다. 피의 복수는 무분별하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방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즉 피의 복수는 보복의 행위로서 종식되는 것은 아니었다.

피의 복수는 용서와 화해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화해의 수단으로 배상과 보상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배상에 대해서는 아다트라는 전통적 관습법에 규정되어 있다. 피의 복수는 카프카스 민족의 일반법인 아다트에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피의 복수는 일정한 법적인 토대에 기초해 있었다. 피해 당사자가 피의 복수의 대상자와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아다트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다트와 상관없이 피의 복수가 ‘복수’로 종결되기도 하며, 이는 아다트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복수’라는 용어 자체를 놓고 본다면, 아다트는 ‘복수’ 방지의 기능이 있고, 복수가 아닌 화해를 위해 적용하는 보상

1) 정세진, 「북카프카스 소수민족의 ‘피의 복수’: 용서와 화해의 변증적 방식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7권 1호 (2017), 331-354 쪽.

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 아다트는 법률인데, 법률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인격적인 보상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완전한 화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존재론적 질문을 던질 수는 있을 것이다.

피의 복수 사건은 학문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전통적인 관습이 어떤 양태로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를 제시해준다. 즉 이슬람과 변별적인 법적, 문화적 요소로서 아다트는 무슬림의 다양한 삶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북카프카스의 피의 복수와 아다트에 관련된 국내 연구 논문은 없으며, 용서와 화해의 변증적 방식으로 피의 복수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으나 피의 복수와 아다트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연구한 논문은 없다. 다만 카프카스 지역의 아다트와 샤리아를 비교 연구하거나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아다트에 대한 일부 연구가 있다. 이밖에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 혹은 복수전과 같은 내용 정도로 분석된 연구 논문이 있다.

본 논고는 2장에서 피의 복수의 일반적 범주에 대해 적시하고 3장에서 북카프카스 사회에서의 아다트와 샤리아의 관계 및 아다트 기록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피의 복수 사건과 아다트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명하고 5장에서는 아다트 법정 심리와 그 예시를 서술할 것이다.

II. 피의 복수와 관련된 일반적 범주

피의 복수에 대해 언급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범주는 무엇일까? 그것은 살인, 상해, 강간 등 신체적인 피해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나를 비롯한 친족, 부족에게 살해, 상해 등 신체적인 피해를 끼칠 때에 피의 복수 대상이 되었다. 피의 복수는 일정한 부분 전승되기도 하였고 일정한 형태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유적처럼 남아있기도 하다. 피의 복수의 범주는 광범위하였다. 단지 신체적 상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 넓게 존재하였다. 중대한 모욕,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등 개인이나 공동체를 모독하는 것도 그 범주에 포함되었다.

피의 복수가 지속적으로 관습처럼 전승된 이유는 남성의 명예라는 고대적인 개념, 즉 명예가 손상을 받을 수 없다는 개인 권리의 인식에서 시작했다. 적절하고 합당하지 않은 언어 구사에도 피의 복수가 적용되었다. 공동체 내의 부모, 가족, 친척 등에게 언어적 모욕을 가하거나, 공동체 내에서 조차도 최소한 준수해야 할 기본 규정을 어기는 경우 피의 복수가 성립될 수 있었다. 상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족 전통과 사회 조직과도 연관되었기 때문이다.²⁾

피의 복수는 공동체 내, 혹은 공동체를 초월해서 행해진 폭행도 그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토지에 관련된 개인적 분쟁도 그 대상이 되었다. 피의 복수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특정 개인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피해를 받을 때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피의 복수는 용서와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충격적으로 결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³⁾ 현대사회에서 복수는 피해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도소를 통해 징벌이 이루어진다.⁴⁾ 전통적 사회에서는

-
- 2) 이는 민족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는 강대국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영역에까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Emil Souleimanov, *An Endless War: The Russian-Chechen Conflict in Perspective* (Frankfurt am Main : Peter Lang, 2007), pp. 24-39, Zeyno Baran, S. Frederick Starr and Svante E. Cornell, *Islamic Radicalism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Implications for the EU*, The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Paper (July 2006), pp. 45-46.
- 3) 북카프카스 지역의 다게스탄, 체첸, 잉구세티아 지역에서 이 관습은 지금도 전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일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Emil Souleimanov, Ondrej Ditrych, "The Internationalisation of the Russian-Chechen Conflict: Myths and Reality," *Europe-Asia Studies*, Vol. 60, No. 7 (2008), p. 1217.
- 4) 국가를 상대로 행동하는 동기는 꼭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감행하는 것은 결국은 간단한 행동이 아니다. 복수를 행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병참 부대의 지원 등이 필요로 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복수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저항 운동과 연결되어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민중 사이에서 지원을 얻는 것은 폭력의 전체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군대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휴식처와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신병들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Emil Souleimanov, "The Caucasus emirate: genealogy of

자신에게 일정한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상대방 공동체에 복수를 하지 못하는 공동체 전체에게도 해당되었다. 친족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친족의 입장에서 복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개인 및 전체 부족 사회에 불명예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복수는 부계의 가족 중에 남성에게 적용되며, 특별히 형제, 아버지, 아들, 그리고 가까운 친족에게 해당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고지대에 속하는 고립된 지역에서 더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피의 복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관계없이 폭력의 사이클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피의 복수를 의무적으로 행하는 권한은 피살된 자, 혹은 피해 입은 자의 모든 직계 가족에게 해당되었다. 이런 권리가 있는 이들을 “피의 소유자”로 불렀다.⁵⁾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의무사항처럼 간주되었다. 강력한 씨족공동체의 경우, 적의(敵意)는 상호 간에 수십 년, 수백 년 간 이어졌다. 씨족 공동체 전체가 그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었고,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도 벌어졌다. 씨족공동체 간에 살해 사건, 강제적 인신매매, 노예매매 사건도 벌어졌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오세티야 지역에서 발생한 피의 복수는 공동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했으며, 씨족 및 종족 간의 갈등으로 변진 경우도 있었다.⁶⁾ 예를 들면, 북카프카스 에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메흐톨린의 첸구타야 마을에서 거주하던 미르자-베크(Мирза-Бек)라는 사람이 이르가나이 마을로 도주해 와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몇 년 간 살다가 그 마을의 어떤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가 살해되었다. 이후 무서운 피의 복수가 일어났다. 첸구타야 마을에서 17명이 이르가나이 마을로 와서 살인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마침 그 살인자가 집에 없었고, 마을의 부인 2명이 복수의 희생물이 되어 살해되었다. 그러자 이르가나이 마

an Islamist insurgency,” Middle east policy, Vol. 18, No. 4 (Winter 2011), p. 161.

5) Хрестоматия по истории права и государства Дагестана I (Махачкала, 1999), с. 49-51.
6) Ш. М. Казиев, И.В. Карпеев,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горцев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XIX веке (Моск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2003), с. 156.

을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고 쟈구타야에서 온 사람들은 감금당하고 피의 복수로 일부가 죽기도 하였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체첸, 잉기쉬, 다게스탄 민족 계에 피의 복수 관습으로 사회 계층 간에 여러 갈등이 있어왔다. 7) 3장에서 기술하지만, 아다트에 의해 피의 복수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으며, 서론에서 언급했듯, 피의 복수는 복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상과 보상으로 화해로 결말나기도 했다. 즉 아다트 에는 화해와 용서라는 원칙이 매우 중요시되었다. 피의 복수의 대상을 찾아서 동일하게 복수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상으로 화해를 시도하는 일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북카프카스 에서 살인자는 ‘바쉬-칸을이’(Баш-канлы)라고 명명되었다. 공동체 내에 살인자가 발생하였을 때, 살인자의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최소 1명에서 최대 7명까지 그 살인자와 함께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결정이 부과될 때가 있었다. 그 대신에 이들은 피살자의 가족들로부터 살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하였으며, 최소한 6일에서 최장 1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럴 경우, 배상금이 지불되었다. 마을에서 추방된 자들은 ‘말-칸을이’(мал - канлы)라고 명명되었다. 추방은 원칙적으로 살해사건과 관련이 있었으며, 그런 경우에 추방이 결정되었다. 살해 사건이 벌어지고, 2명 혹은 그 이상의 ‘바쉬-칸을이’가 지정되면, 이는 ‘말-칸을이’가 지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게스탄 다르긴 지역의 휴라킨 공동체에서는 살인자

7) 체첸 전쟁 시기에 체첸 군사주의자들의 급진화 이유의 근본 뿌리로서, 글로벌 지하드의 전쟁터로서 북카프카스의 당면한 상황으로서 체첸 저항의 국제화의 다양한 개념 등이 나타난 이후로 이 지역에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난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사건은 북카프카스의 인접한 지역으로의 갈등이 널리 퍼진 것을 설명하는 데 주요한 요소로서 피의 복수의 관습에 근거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체첸 전쟁 등 이 지역에서의 분쟁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습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이 역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저항의 핵심 지역인 산악 지역에서 지금도 러시아연방에 저항해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투쟁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이슬람과 아다트 법률이 개입되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게스탄의 거대한 군사집단의 대부분의 투쟁 지역이 다게스탄 산악지역의 고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비슷하게 체첸 저항도 전통적으로 산악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 기혼자라면, 아내가 첫 번째의 ‘말-간을이’로 지정되었다. ‘말-간을이’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건 관련자의 형벌이 확대되었다는 의미였다. 즉 살인자의 가족, 친족에게도 형벌이 확대되어 부과된 것이다. 용서에 대한 배상금이 살인자에게 원천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피의 복수 사건에는 살해와 상해 등의 신체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범죄자를 마을에서 추방하는 일이 원칙이었다.⁸⁾

‘간을이’로 공표된 사람은 거주지보다 멀리 떨어진 지역의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영향력 있는 원로나 권위자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었다. 원로들은 피살자의 가족들과 화해를 중재하는 권한이 있어 가해자 측에서는 이들에게 의존하였다. 살인자는 화해 방식을 통해 피의 복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모색하였다. ‘간을이’로 지정된 모든 이들은 피난처, 혹은 보호지에서 화해를 시도하였다. 살인자가 피살자 가족들과 화해에 합의하게 되면, 살인자에 대한 추방 기간이 정해졌다. 쿠믹 민족은 2년, 트레이세르후와 아르티 마을은 3년, 안틀라틀레, 안추호, 까뿌체 지역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추방당했다. 나머지 지역은 피살자 가족들과의 협의 하에 결정되었다.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런 협상은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살인자의 경우, 화해와 보상, 협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복수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인자는 매우 신중하게 배상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살인자는 피살자의 가족들로부터 추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많은 경우에 그는 보호를 위해 숨어서 지내기도 하며,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했다. 살인자가 피의 복수

8) 북카프카스의 기다틀 지역에서는 마을의 다리를 고의로 방화한 자는 벌금을 물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며, 이들은 피의 복수의 대상자로 간주되었다. 범죄자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모욕당한 공동체와 친족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추방되어야만 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이들이 러시아 요새로 단순히 떠나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평화스럽게 거주하기도 했다. 일부는 러시아 군대에서 피난처를 구하거나 러시아 군대에 봉직하기도 했다. Ш. М. Казиев, Имам Шамиль.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Моск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2001), с. 139.

의 대상이 된다면 살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벌금을 내고 피의 복수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벌금의 대상과 종류는 공동체마다 동일하지 않았다. 다르긴 지역에서 벌금은 하루 동안 하는 기도의 숫자만큼 황소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의 기도를 한다.

다게스탄의 안디, 카이타고-타바사란 지역에서 살인자는 도망치거나 자신의 집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범죄에 대한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범죄자가 집에 남아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 중에 피살자 가족들에 의해 포위되고 살해당할 수도 있었다. 이런 경우 범죄자는 집으로부터 나갈 수없는 상태이므로 자유 상실의 상태가 되고 피해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 일부 범죄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10년간 연금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 살인자는 공동체에서 추방되지 않고 마을 책임자의 감시 하에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다게스탄의 사무르 지역에서는 관습에 따라 러시아 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맡았다. 살인자는 6개월 이상 공동체의 책임자에 의해 감금되며, 이후에 피살자 가족들과의 화해가 시도되고 실제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살인자가 배상, 혹은 보상으로 자신의 행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배상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배상은 피해자의 권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적인 성격이었다. 중재를 거부하는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공동체로부터 외면과 적의를 받아야했다. 그리고 당연히 심각한 범죄를 예외로 하고, 각 공동체가 가동하고 있던 법률적 시스템으로 판단해보건대, 중재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범죄자에게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통치자 그룹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 소추에 있어 타협하거나 연대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다. 중재자들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습법 과정에 참여하였다. 아다트 법령에서 매우 특징적인 사건은 계획적인 살인의 경우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에 피해자 가족은 일반적으로 법

정에 정식 심리를 요청하고 가장 엄격한 형벌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피의 복수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 있었다. 덧붙여, 이러한 범죄에는 가족 책임도 수반되었다.⁹⁾

Ⅲ. 북카프카스 사회에서의 아다트-샤리아 관계 및 아다트 기록

3장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아다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슬람이 전파되기 이전 법적이고 시민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립된 원칙이 있었는데, 이를 아다트라고 하였다. 아다트는 특정 민족에게 존재하는 관습법을 의미한다.¹⁰⁾ 아다트는 ‘지방 거주민의 법률 총합 체계’ 혹은 넓은 의미로는 ‘일반 관습법’으로 해석되었다. 아다트는 가족, 씨족, 종족, 사회 계층을 규정하는 역할을 가졌으며, 광범위한 법률적 체계였다. 특히 북카프카스 사회에서 아다트는 거주민들이 무슬림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전통의 관습법으로 오랫동안 사회적 역할을 맡아왔다.¹¹⁾ 아다트는 일상생활의 각종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법을 규정하였는데, 특정한 씨족, 친족 들 간의 일상생활 뿐 만 아니라 폭력 상황을 분석하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북동 카프카스인 체첸과 다게스탄 지역에서도 아다트는 존재하였으며, 북오세티아, 체르케시아 등 북서 카프카스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아다트가 존재했다.

18세기 중엽-19세기 중엽, 러시아가 북카프카스를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이전까지 피의 복수에 관한 기록은 간접적인 자료로 전해졌다. 이에 는 피의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방법에 관한 기록 등이 문헌

9) Water Comins-Richmond, “Legal Pluralism in the Northwest Caucasus: The Role of Sharia Courts,” Religion, State & Society, Vol. 32, No. 1 (March 2004), p. 63.

10) Кавказ: Адааты горских народов (Нальчик: Издательство М. и В. Котляровых, 2010), с. 7-8.

11) 이에 관해서는 정세진, 『북카프카스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전통적 아다트 관습법과 이슬람의 샤리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집』, 제 28권 1호 (2007), 411-413 쪽.

으로 남겨져 있고 기록물로써 보존된 경우도 있었다. 피의 복수에 관해서는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진 부분도 있지만, 관습적으로 전승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피의 복수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아랍어로 기술되었다. 원시적 방식이지만, 구전으로 전승된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초까지 피의 복수에 관한 기록은 부분적으로 재구성되어 전승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방법적 측면에서 피의 복수에 관한 아다트 원칙이 구전으로 전승된다면, 이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규정이나 원칙이 구전으로 전승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역사의 기억을 기록물 이외의 것에 의존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19세기 중반기, 제정 러시아의 대개혁의 시기에 피의 복수와 관련된 아다트 기록은 대체적으로 믿을만한 자료가 많았다. 북카프카스의 핵심 지역인 다게스탄을 예로 든다면, 산악 지역의 피의 복수에 관해 기술한 문집은 단일한 논점으로 남겨져 있었다.¹²⁾

대개혁시기의 아다트에 관한 기술에 근간해본다면, 피의 복수는 어떠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을까? 피의 복수는 여성에 대한 모욕, 토지의 점유, 의도된 상해 혹은 살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행위이며, 언어와 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등도 그 대상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말과 개를 탈취하여 소유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피의 복수에 해당되었다.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이유인지 자신의 결혼 계획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처녀의 형제와 다른 친족들은 그 남성이 자신들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복수를 결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욕을 준 자를 추적, 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피의 복수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였다. 한 명의 처녀를 2명의

12) 다게스탄 다르긴 지역의 2개 공동체에서는 17세기부터 1860년대까지 거의 200년 동안이나 피의 복수와 같은 적대 관계가 이어져 왔다는 기록이 있다. А.В. Комаров, Адагы и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 по ним (материалы для статистики Даге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ССКГ, вып.1 (1868), с. 43-49.

남자가 관심을 보이다가 한 명의 남자가 연적에게 그 여인을 포기하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남자 사이에 적의가 생성되고 살인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건에도 피의 복수가 적용되었다. 피의 복수의 범위는 다양하였는데, 피해를 입은 개인, 혹은 친족이 피의 복수를 결행할 수 있었다. 즉 피해자의 명예는 살인자, 상해자의 친족, 사촌 등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이 피의 복수의 관례이다. 피의 보복은 만료일이 없는 행위였다. 피의 복수에서는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¹³⁾

북카프카스 중에서도 북동카프카스는 체첸, 다게스탄 민족이 포함되는데, 19세기에 러시아에 저항한 소위 ‘산악 민족’이 중심이 된 지역이다. 현재 2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다게스탄을 포함, 북동카프카스는 북서카프카스 지역보다도 피의 복수의 전통이 더 강했다.¹⁴⁾ 체첸과 더불어 그 전통이 강한 곳이 다게스탄 산악지역이었다. 다게스탄은 카스피해에 있는 북동 카프카스 지역에 속했다. 특별히 고지대 산악의 거주민들에게는 이런 전통이 더 강하게 남아있다. 다게스탄 사회에서는 명예의 관례에 따라 살아가는 전통이 있다. 독신 여성의 미덕은 정절이었으며, 미혼 여성의 미덕은 남편과 그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었다. 남성들은 명예를 더럽힌 자들을 복수하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족과 부족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고결한 삶의 형태로 되어 있다.¹⁵⁾ 전통적인 명예는 체첸과 다게스탄 사회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규정하는 토대였다. 남성의 명예가 특별히 여성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명예는 전체적으로 다른 경향들, 즉 용기, 환대, 고결과 연관되어 있었다. 남성의 명예는 여성의 명예를 지키고, 친족과 씨족을 보호하는 능력과 일

13) Emil Souleimanov, Huseyn Aliyev, “Blood Revenge and Violent Mobilization, Evidence from the Chechen Wars,” *International Security*, Vol. 40, No. 2 (Fall 2015), p. 170.

14) 20세기 말 러시아와 체첸의 전쟁 기간 동안에도 피의 복수의 전통은 체첸 인의 저항의 모티프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피는 피로 갚는다는 ‘피의 복수’의 전통은 러시아에 대한 체첸 인의 저항 의식에도 하나의 작용을 하였다.

15) Souleimanov (2007), pp. 24-39.

맥상통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¹⁶⁾

아다트는 이슬람이 전파되기 이전의 관습법이라고 상기에 언급하였는데, 북카프카스 사회가 점진적으로 이슬람을 사회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아다트는 부족의 전통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며, 여러 종류의 버전이 있었다. 샤리아는 이슬람 법률 체계이므로 아다트와 여러 면에서 법률적 적용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북카프카스에서 샤리아와 아다트는 다양하게 그 차이점이 있었다. 공통성을 적시해본다면, 사회적 법률 체계였다. 북카프카스 거주민들이 무슬림교도가 되었을 때 수용한 종파는 주로 순니파의 ‘하나피 마드하브’ (Hanafi Madhhab)인데,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을 전파했다. 이론적으로 샤리아는 아다트 보다 상위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무슬림 법정에서는 아다트가 샤리아에 대치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아다트 규정도 동시에 심리되었다.¹⁷⁾ 그런데 무슬림이라도 이슬람의 원칙과 반드시 부합하는 관습을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지방 사회에서는 아다트의 기능이 매우 강력해 샤리아의 규범 자체가 아다트와 분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샤리아는 관습법이 일정한 범위에서 수용되는 경우에만 현실화되었다. 그 이유가 지역의 관습 및 전통은 이슬람이 전파되기 이전 북카프카스 사회에서 이미 정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다트는 다신교적 양태와 혼합되어 있던 관계로 샤리아와 배치된 측면이 강했다. 샤리아 관점에서 본다면, 아다트는 종교적 원칙과는 거리가 있었다.¹⁸⁾

샤리아는 이슬람 역사의 처음 몇 세기에 걸쳐 공적 및 사적 무슬림의 삶의 모든 면을 규제하는 원칙에서 발전된 종교적 교훈과 지침이었다.¹⁹⁾

16) Souleimanov, Aliyev (2015), p. 170.

17) Richmond (2004), p. 60.

18) L. Siukiainen, “Shari’ah and Muslim-law culture,”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4 (1999), www.ca-c.org/dataeng/Book/08.syki.shtml.

19) Г.М.Керимов, *Шариат. Закон жизни мусульман. Ответы Шариата на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сти* (Москва: Дия, 2007), с. 4.

샤리아의 핵심 측면은 형사 문제를 다룬다는 것에 있는데, 이슬람 학자들이 법적 판결을 내렸다. 샤리아를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아다트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련자와 중재자의 의결이나 결정이 따랐던 반면에 샤리아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학자와 숙련된 이맘만이 내릴 수 있었다. 양형에 약간의 융통성이 있지만, 물질적 보상이 가능할지라도 거의 모든 형사 범죄에 대해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샤리아의 또 다른 범주에는 무슬림의 일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아다트 법률 체계의 법적, 시민적 판결과는 그 의미가 확연히 달랐다.²⁰⁾

샤리아와 아다트는 이론적으로는 공존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북카프카스 사회에서 아다트와 샤리아라는 2가지 시스템은 반대적 패턴으로 기능하였으며, 아다트를 부인하지 않는 샤리아 법률만이 성공적으로 수용되었다. 즉 이슬람이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까지 샤리아는 사소한 역할만을 가졌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서야, 샤리아와 아다트 간의 차이는 좁아져 갔으며, 혼합 시스템이 작동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알코올 소비, 조상 숭배 등과 같은 前 이슬람 전통을 포함한 여러 관습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²¹⁾

다게스탄과 체첸의 이슬람 개혁자들, 특히 이맘 샴일은 아다트에 대한 의존을 감소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이는 일부 제한된 성공에 그쳤다. 샤리아의 입장에서 아다트를 제한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제정러시아 정부는 샤리아 법정의 합법적인 설립에 대해서는 비 간섭주의 입장을 취했다.²²⁾ 1807년부터 러시아는 러시아인에 대한 심리 이외에는 정부의 공식적인 법정과 더불어 샤리아와 아다트 법정이 나란히 기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정러시아는 1860년대에 사법개

20) Н.И.Покровский, *Кавказские войны и имамат Шамиля* (Москва: РОССПЭН, 2009), с. 238-239.

21) *Кавказ: Закон и обычай. Том 1. Источники Кавказского адата* (Нальчик: Издательство М. и В. Котляровых, 2011), с. 294-300.

22) Richmond (2004), p. 61.

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 시기 동안에 아다트 등의 다양한 법적 심리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북카프카스의 사법 제도는 20세기 소비에트 권력이 강력히 발동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그런데, 19세기 전반기에 정치권, 사법권, 군사권, 종교권을 장악하고 북카프카스를 통치한 전설적 인물인 이맘 샤밀은 피의 복수 관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신정국가를 통치하면서 이슬람을 중시 여기는 통치를 이끌고 다양한 개혁적인 일들을 많이 도입하였다.²³⁾ 그는 사리아 법률만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아다트 자체는 제정러시아에 맞서 군사적으로 저항하고자 했던 당시 소수 민족의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간주했다.²⁴⁾ 이맘 샤밀은 대 러시아 저항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다트의 영향력을 봉쇄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 복수 관습 자체를 올바른 전통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19세기 전반기에 이맘의 권력 하에 공동체가 종속되어 있는 경우, 범죄자가 마을에 은신한다는 것은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²⁵⁾ 피의 복수는 천년 이상이나 산악 지대에서 존재해 온 관습이었다. 그러나 피살된 자의 가족 혹은 친족에 의한 피의 복수는 완전히 근절되지 못했다. 샤밀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로 살인자의 친족이 연쇄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거주민들의 보호와 인구 증가에도 신경을 썼다. 당시 러시아와 투쟁한 제 3대 샤밀 이전에 이미 1대 이맘인 가지-무하메드는 피의 복수 관습을 반대했는데,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자. 자신의 삶을 위해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 책임을 지자”는 식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조했다.²⁶⁾

23) Александр Ляховский, Зачарованные свободой. Тайны кавказских войн. Информация. Анализ. Выводы (Москва: Детективпресс, 2006), с. 74.

24)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ред. А.И.Миллер) (Москва: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7), с. 122-123.

25) 심지어 당시에는 긴급한 소식이나 이맘의 명령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체계 있는 행동 규칙이 있었으며, “날아가는 우편물”이라는 시스템을 가동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기마병, 특별한 전언들, 망루의 모닥불 등이 포함되었다. 심지어는 비둘기를 이용한 소식 전언 등이 있었다. Казиев (2001), с. 139.

IV. 피의 복수 사건과 아다트 기능

피의 복수와 관련, 아다트의 기능을 분석해본다면, 형사범죄를 포함해 아다트의 기본적인 근간은 화해의 원칙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아다트는 개인 및 공동체에 있어서 관용을 베푸는 것과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많았다.²⁷⁾ 아다트는 물질적 피해 등 범죄 사항에 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한 측면이 있었다. 아다트는 오랜 시기 동안 형성된 전형적인 법의 형태였다. 그런데 북카프카스 사회에서는 명예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전통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다트의 적용에 있어서 물질적 피해보다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더 강한 징벌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었다.²⁸⁾

아다트는 씨족 공동체의 보호라는 원칙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북카프카스 사회의 지역적 특색과도 연관이 있었다. 아다트는 공동체성과 매우 긴밀히 연결된 관습법이다. 카프카스 공동체에 규정된 아다트의 내용에는 상호 서약의 관습이 나타나있다. 자신이 범죄자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체의 일원은 상호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서약을 의미하는 법률적 용어를 투세프(Тусев)라고 불렀다. 범죄자로 의심을 받을 경우, 서약자는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공동체 내부에서 서약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남자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해야하고 토지를 와크프²⁹⁾에 양도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야했다. 서약을 필요로 하는 규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

26) Расул Магомедов, Борьба горце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Шамиля (Махачкала, 1939), с. 45.

27) 북카프카스 사회에서 샤리아에 의거한 법적 처벌은 일정한 공동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카프카스는 전통적인 이슬람 지역이었으며, 이슬람 법적체계인 샤리아도 점진적으로 중요성을 가졌지만, 아다트는 전통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적 요소로 정착된 법률이었다.

28) 성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이 경우 여성이 피해자인데, 결혼을 가해자와 한다는 사실이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릇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일종의 보상의 개념으로 남성이 여성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수용되었다.

29) 무슬림 사회에서 공익이나 자선 목적으로 재산을 기탁하는 행위, 혹은 그렇게 하여 세워진 기관이다.

이가 있었다. 불륜 행위는 아주 심각한 범죄였다. 이 경우 다게스탄의 아바르 인은 약 26명 정도의 집단 서약을 필요로 하였다. 체쿠프스 공동체에는 15명 정도의 가까운 친족들의 서약을 필요로 하였다. 범죄자는 서약, 즉 집단 맹세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말을 훔친 자에게는 15명의 남성으로부터 서약을 얻어야 했다. 암소인 경우에는 5명, 양의 경우에는 1명의 남성으로부터 서약을 받아야 했다. 방화를 저지른 자가 자신을 유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자는 공동체에서 15명의 서약자를 확보해야 한다.³⁰⁾

일부 농민들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지주를 살해하거나 그런 음모를 꾸미는 경우, 아다트에 따르면, 살인자는 배상을 지불하든지, 혹은 피의 복수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칸, 귀족 등이 폭정을 진압하거나 폭동 주도자를 죽이는 경우 아다트는 살인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피의 복수는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끼리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³¹⁾ 그러나 이에 반해, 귀족이 평민을 살해하면 피살자의 친족은 그 귀족에게 복수할 수 없었다. 이런 경우 귀족이 칸의 친족에 속하거나 형제인 경우 거주지에서 추방되지 않아도 되고, 피살자의 가족으로부터도 피의 복수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다.³²⁾

공동체성과 관련, 아다트의 기능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까? 아다트는 폭력적 현상에 대해서는 정교한 법률적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³³⁾ 오랜 역사적 시기 동안 북카프카스 사회는 공통적, 공동적인 삶의 기반이 매우 강한 지역이고, 공동의 의무와 관습을 중요시여기는 전형적인 사회로 폭

30) В. О. Бобровников, Мусульмане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обычай. право. насилие (Москва, 2002), с. 59.

31) Адагы Даге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Закатальского округа (Тифлис, 1899), с. 69, 88.

32) 그런데, 백작을 살해한 평민은 라크 공동체의 아다트에 따르면, 그 즉시 6명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떠나야만 한다. Р.М. Магомедов, Адагы Дагестанских горцев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Москва, 1960), с. 5.

33) Yuri Y. Kaprov "Images of Violence in Modern and Recent History of the Peoples of the North Caucasus," *Anthropology & Archeology of Eurasia*, Vol. 41, No. 4 (2003), p.14.

력에 관한 엄격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체첸의 관습인 ‘바이탈 바크하르’(평등)에 따르면, 구성원이 소유한 가축이 공동체가 정한 일반적인 규범보다도 초과하는 경우 마을의 촌장이 특정한 날, 그 가축을 임의로 빼앗아서 분배할 수 있었는데, 가난하고 불행한 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³⁴⁾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정 개인의 사적 재산을 일방적으로 빼앗고 물질적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모순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각 공동체마다 아다트는 개별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형태로의 폭력의 확장을 초래할 수 있다.³⁵⁾

전체적으로 북카프카스 사회의 아다트는 폭력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공의 이익, 공동의 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상호 간에 일정한 규정이 정립되어 있었다. 누군가 경작지와 집을 다른 공동체의 거주민에게 판매하고, 다른 마을로부터 땅을 임차하거나 양을 훔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악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도 광범위한 폭력의 현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³⁶⁾ 마을공동체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으며, 이 때문에 공동체의 허락 없이 임의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었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일어난다면, 피의 복수가 적용되며, 이러한 상황이 아다트로 규정되어 있었다.

아다트는 상기에 강조하였듯이, 범죄 발생 시에 화해 등 중재의 기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다. 즉 배상에 관한 여러 법규 중에, 피해자의 숫자만큼 가해자도 동일한 숫자로 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배상 이외에 당연히 복수를 당할 수도 있었다.³⁷⁾ 아다트는 살인자에 대한 추방 규정도

34) Л. Ю. Маргошвили, К вопросу о переселений ваинахов на территорию Грузии Грузино-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Тбилиси, 1981), с. 131.

35) 공동체 구성원의 물질적 부가 축적되고 증가됨에 따라 개인의 경제 권력도 점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그러한 현상은 폭력과 동등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권력이 공동체에 반대되고 개인이 공동체 권력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는 폭력적 상황으로 분류된다. Karrov (2003), p.14.

36) Памятники обычного права Дагестана XVII-XIX вв. (Москва, 1965), с. 75, 78.

37) Karrov (2003), p. 12.

있는데, 그는 안전을 위해 다른 지역에 숨어있어야 했다. 살인자는 빠른 시간 내 고향이나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었으며, 피살자 친족의 거주지로 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다게스탄의 트레이세루호에서 살인자가 3년간 추방 판결 받은 경우, 1년에 3차례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 그러나 집에 올 때마다 10일 밤 이상 머물 수 없었다. 피살자의 가족이나 친족은 그를 추적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혹 추적의 경우 범을 어기는 자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추방이 되더라도 살인자는 피살된 자의 친족을 만날 시에는 어디에서든지 살해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의 없이 어린이나 광인을 죽인 경우는 벌금만 지불하고 피의 복수에서 면할 수 있었다. 다게스탄의 아바리아와 운크라틀레 지역에서는 유아살해의 경우, 부모의 고소가 없다면, 피의 복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벌금으로 대신하였다. 노예를 죽인 범죄자는 주인에게 높은 보상금을 지불하면 된다. 이 경우 보상금은 그 노예의 값어치에 따른 정도의 액수였다. 상해 이외 토지와 관련된 아다트의 예를 본다면, 지역 공동체 간에 소작농 토지에 관련된 토지 분쟁도 피의 복수로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다툼은 목장과 용수 사용 권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토지 분쟁이나 충돌은 살인이나 상해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다. 아다트는 이에 대해 피의 복수를 언급한다. 모든 분쟁은 개인의 불명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친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을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과될 수 없는 것이 아다트가 규정됨으로써 피의 복수가 기본적으로 금지되고 화해로 종결되지만, 아다트가 피의 복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각 민족에 따라 동일하지 않지만, 아다트는 직접적인 피의 복수가 가능한 규정도 있다. 아래의 부분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피의 복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첫째, 가족이나 친척을 죽인 살인자에게 피의 복수가 가능하다. 둘째, 각 민족 공동체와 관련, 피의 복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강도짓을

일삼아서 공동체로부터 공동체의 적으로 선포된 자이다. 셋째, 가족 구성원 중 여성에게 죄를 범한 자이다. 예를 들면, 아내, 딸, 모친, 자매를 강간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하는데, 심지어 이들을 살해하는 경우는 무죄로 간주되기도 했다. 넷째, 성(性)에 관련된 것인데, 남색을 범하는 이들은 친척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유아, 정신지체아, 말과 강아지 등 가축 소유자를 죽이는 이들도 피의 복수를 당할 수 있었다. 쿠믹 민족의 경우 광인이나 정신지체아에 의해 살인이 이루어진 경우는 후견인이나 감독자에게 피의 복수가 부과되기도 했다. 이런 원칙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인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되었다.

아다트는 이슬람 성전(聖殿)에서의 피의 복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수를 통한 살인 행위는 허락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피살자 친척들에 의해 피의 복수의 대상이 언제나 될 수 있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끼리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집 주인이 살인자를 숨겨주는 경우 범죄자로 간주되며, 만약 살해에 관여되어 있다면, 피의 복수 대상이 되었다. 주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었다. 체첸 민족의 경우 피의 복수는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졌다. 피의 복수는 살인과 같은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자를 처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게스탄 내 각 민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투흠’(туху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투흠은 초기에는 큰 집에 경작지와 목장지가 다 포함되어 있던 구조였으며, 농업에 종사하였다.³⁸⁾ 가족 공동체였다. 19세기까지 공동체 내에서 혈족 관계의 원칙이 이루어졌으며, 가정에 관련된 공통성이 있었다. 투흠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아다트의 규정에 피의 복수가 행해지면서 피살자의 숫자가 원래의 피살자의 숫자와 동수가 되는 경우에는 피의 복수가 청산되었다고 간주되었다. 피살자의 숫자가 더 많은 공동체에서는 그 차이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³⁹⁾

38) Р.М. Магомедов, К вопросу о семейной общине в Дагестане, - Труды второй научной сессии Даг. базы АН СССР (1947), с. 81-95.

39) Адагы южно-дагестанских обществ, ССКГ, вып. 7 (1875), с. 34.

V. 아다트 예시와 법정 심리

모든 아울(аул: 마을)에는 나름의 독특한 관습법이 있었다. 공동체의 원로들은 공동체 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화해가 잘 안될 시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채택, 중재 재판소로 양 당사자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 심의는 재판관에게 넘어가고 원로들 앞에서 양 측은 재판관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범죄자 혐의가 있는 이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판결 심의는 배심원 및 재판관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범죄자의 친족은 그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 입은 자의 친족에게 배상해야 한다. 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범죄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범죄자의 친족에게 주어졌다. 배상금 지불은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여러 기간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되어있었다. 피고인에게는 소와 배상금, 일정한 땅을 고소인에 양도해야 한다는 통지문이 전달되기도 하였다.

먹을 것이 없어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닭고기를 훔친 경우에 그는 징벌 수단으로 성체 숫양으로 갚아야 했다. 만약에 양을 훔쳤다면 황소를 배상 수단으로 갚아야 한다. 황소를 훔친 사람이 갚아야 할 가축은 말이었다. 피살자 친족을 만나는 경우는 어떠한 형벌이라도 각오해야 했다. 모든 피해 보상금이 다 지불이 되는 경우에는 양측의 평화를 위해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가해자 측을 위한 연회를 통상적으로 베풀어야 했으며, 연회에는 양 요리와 소고기, 보드카 등이 제공되었다. 연회에 여러 축하 행사들이 동원되었다. 연회의 형식은 매우 단순하였다.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나 그 친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 행동은 피해자의 용서로 수용되었다. 이후 매우 강한 주연이 베풀어졌다. 식사, 음주 가무가 뒤따르며, 연회가 끝날 때쯤이면 양 당사자가 매우 만족한 상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또 다른 살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용서 받은 자는 피를 나눈 형제가 되며, 피살자의 친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피살자와 그 가족의 무덤에 자주 찾아가며, 매장지에 음식과 술을 가져가서 예의를 드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티야 지역에서는 봉건적인 분쟁이 지속되었다. 이를 종식하기 위해 1830년에는 현재 북오세티야의 수도인 블라디카프카스에 특별 위원회가 가동되었다.

다음은 북카프카스의 특정 지역의 아다트 예시와 법정 심리에 관한 내용이다.

첫째, 오세티야 아다트에 따르면, 살해의 경우는 최대 324 마리의 소를 배상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되었다. 만약에 피고인이 기한 내에 배상금 지불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에는 피의 복수가 시작되어도 무방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피의 복수가 시작된다면, 그때까지 피해자 측에 지불된 배상금은 다시 돌려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기한 내에 배상금이 지불 되지 않는다면,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피해자 측은 배상금 지불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⁴⁰⁾ 오세티야에서는 오랜 기간 아다트에 따른 법집행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백 년 동안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 간에 평화스럽게 살아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가장 경미한 법률적 분쟁을 포함하여 법을 어기는 경우, 피의 복수가 행해지더라도 법으로 심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일정한 보복을 가했으며, 언쟁은 살인을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분쟁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아주 작은 일에도 피의 복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피의 복수로 수백 명의 인명이 살해당한 일들이 있었다. 피의 복수는 자유인들의 의무처럼 받아들여졌다.

둘째, 현재 조지아 공화국에 속하는 아브하지아 지역에서는 피살자의 친족이 별로 영향력이 없거나 살인자를 징벌할 상황이 아닌 경우, 살인자를 법정에서 심의하였다. 혹은 피의 복수가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에도 법정에서 이런 사건을 결정할 수 있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청원에 따라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피해자 측의 청원을 수용한다

40) Казиев (2001), с. 139.

는 의미이며, 청원에 따라 힘의 균형이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뜻했다. 피의 복수는 피해자 측에서 희망한다면, 벌금을 받는 선에서 용서해주었다. 샤리아에 따르면, 모든 무슬림은 코란 앞에서 평등하며, 각자의 피는 귀족과 평민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를 지녔다. 그런데 아다트는 다양한 신분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 귀족은 일반 귀족보다도, 일반 귀족은 평민보다도 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신분이 높은 이들은 아다트 재판정에서 심의를 원하지만, 일반 평민들이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샤리아 법정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⁴¹⁾

셋째, 북카프카스의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다. 산악 유대인들의 삶은 아다트로 규정되어있었다. 그들의 일반적 삶, 관습, 행동 등은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유대인들의 복수의 의무는 가까운 친족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기도 하였는데,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와 마을에서 경찰 등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아다트에 규정된 일정한 벌금을 물고 살인자는 피의 복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넷째, 다게스탄의 특정 지역인 기다틀 지역의 아다트 예시이다. 이 지역에서는 화해를 위해 적의(敵意) 있는 가계의 주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주요 6개 가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중립적 가계의 촌장들이 서서 기도문을 외우며, 그 이후에 이슬람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영원한 적의를 종식해 달라는 기도를 한다. 이후에 그들 앞에서 평화가 선포된다. 이후 지도자들은 상대방에게 음식 등으로 접대하면서 용서의 의식을 치를 수 있었다.⁴²⁾ 가해자의 가족은 피해자 측 가족과의 화해에 도달하기 위해 중재자의 도움을 통해 특별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건 자체가 계획범죄인 경우에는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법정 심의에 들어가므로 중재자가 화해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사건 심리가 공동체 법정에서 심의되는 상황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마을 거

41) Казиев, Карпеев (2003), с. 158-159.

42) Гидаглинские адаты (1957), с. 35, 39.

주민들도 법정 심의에 포괄적으로 참여하였다.

다게스탄의 호도타 지역과 힌트 지역에 아다트에 규정된 피의 복수에 관한 내용이 있다. “누군가가 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매일 2개의 외투를 보상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⁴³⁾ 그런데, 이 아다트에는 산악 관습에 따라, 살인자가 누군가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보호자 아래 있는 동안에는 살인자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피의 복수에 관해 아다트에 명문화된 조항 등은 다게스탄의 오랜 역사 동안 축적된 결과물이다. 모든 친척, 모든 공동체가 피의 복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고, 복수의 형태가 개인에게만 주어질 때는 단지 아주 가까운 친족들 선에서 복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살해, 부상 등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물질적 보상을 피해자들에게 해주는 경우가 아다트에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해를 당한 이에게 알름(Альым, Алум) 과 디야트(Дият)를 보상으로 지불해야 했다.⁴⁴⁾ 알름은 피살자의 친족에게 제공해야 하는 물질적 지불을 의미했다. 디야트는 피의 복수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보상인데, 이는 살인자를 용서해주도록 합의된 경우였다.⁴⁵⁾ 알름은 투르크 언어인데, 살해 사건이 일어날 때 살인자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알름을 분배받아 지불된다는 의미이다. 서부 및 중부 다게스탄의 각 공동체에서는 알름이 종종 행해졌다.

알름에 대한 몇 가지의 예이다.⁴⁶⁾ 다게스탄 쿠믹 민족의 거주지인 테미르-한-수린스키 지역에서는 살인자의 가족으로부터 황소, 혹은 10루블, 살인자의 형제들에게는 각각 3루블씩, 삼촌에게는 3루블, 조카에게는 2루블, 삼촌의 손자들에게는 1루블, 증손자들에게는 50 코페이카가 할당되

43) Магомедов (1960), с. 5.

44) М.М.Магомедханов, Вопросы корреляции адата, шариата и российских законов в Дагестане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IX -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Традиции народов Кавказа в меняющемся мире (сост. Ю.Ю.Карп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2010), с. 92.

45) Адагы Даге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Закавказского округа (Тифлис, 1899), с. 223-227.

46) 알름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Кавказ: Адагы горских народов, с. 351.

었다. 다르긴 민족의 거주지인 휴라킨스키 공동체는 황소 2마리와 8루블이 지불되어야 한다. 미카긴스키 공동체에서는 황소 2마리를 지불해야 한다. 살인자의 가족은 1루블, 14명의 친척은 각각 50 코페이카의 금액이 지불되었다. 다게스탄의 구니브 지역과 아바르 지역에서는 황소 1마리와 200루블까지 지불이 가능하였다. 루그자, 고노다, 쿨라, 그리고 바짜다 지역은 100루블까지 부과되었다. 그리고 김르와 카하브 지역에서는 20루블까지 지불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하파쿠니, 리후니 마을에서는 40루블 등이 필요했다. 17세기 다게스탄의 안다달 지역의 거주민들을 위한 “결정의무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나온다. “만약에 우리의 대형 마을이 소규모 마을을 점령했다면, 매년 100마리의 양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그리고 더 큰 마을이 작은 마을에 폭력을 행한다면, 그 지역에 속하는 모든 마을은 폭력적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작은 마을을 도와주어야 한다.”⁴⁷⁾

땅을 임차하면서 과도한 세금을 받는다면, 그것도 일반적인 폭력으로 간주되었다. 개인의 일상적 삶을 제거하는 살인과는 대조적이지만, 그러한 행위도 무력 사용에 속하였다.⁴⁸⁾ 아다트는 노예에 관한 규정도 있었는데, 성별에 관계없이 노예들은 모든 가축처럼 소유자들에 속해있었다. 소유주가 각 노예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었다. 제 3자에 의해 노예가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소유자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에 따른 보상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다른 규정에서는 “만약 노예가 자유민을 살해하고, 그 노예가 주인과 동거하거나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 주인은 그 살해에 책임을 져야하며, 그의 모든 재산은 상실되었다. 그리고 주인의 농장 등은 개간 되지 못하며, 건초 밭과 목초지들과 같이 공동체 소유가 되었다”는 규정도 있었다.⁴⁹⁾

47) Памятники обычного права Дагестана XVII-XIX вв. (1965), с. 65.

48) 상기의 규약에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코발레프스키는 “점령했다” (capture)는 의미는 살인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М.М. Ковалевский, Закон и обычай на Кавказе(Нальчик : Полиграфсервис и Т. С. 2011), с. 294-300.

49) Elena Inozemtseva, “On the Social and Legal Status of Slaves in the North Caucasus,”

다음은 피의 복수에 관한 1866년 오세티야 지역의 디고르 지역에서의 아다트의 예시이다.

1) 뼈가 부상당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상자에게 300 루블 지불. 2) 채찍으로 상대방을 가격한 경우에는 300 루블 지불. 3) 막대기 종류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말로 갚아야 함. 4) 누군가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해 의도로 매복할 경우, 범죄자는 120루블 지불. 5) 낮은 신분의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1400 루블 지불. 살인자는 피해자의 친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10루블에 해당하는 비단직물을 지불. 6) 사소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0루블 지불. 상해를 당한 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도 13 루블 지불. 7) 상해로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700루블 지불. 8) 막대기로 상해 입힌 경우에는 3루블 지불. 9) 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가격하는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 지불.

아래 내용은 1866년 오세티야 지역의 타가우르-쿠르타틴 지역의 아다트의 예시이다.

1) 타가우르의 알다르 지구에서 피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은 황소 240 마리이다. 황소 한 마리에 10루블의 가격이므로 이는 총 2400루블에 해당되었다. 지불은 다양한 소유물로 처리되는데, 가축, 땅, 그리고 무기 등이다. 이는 황소 240마리에 상응하는 가격인 2400루블이라야 한다. 2) 머리의 두개골 부분에 상해를 입히거나 손과 발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1,000루블의 보상금이 필요하다. 이는 말, 소총 등으로 지불이 가능하다. 3) 눈에 상해를 입힌 경우는 살해당한 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의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 4) 경미한 상해인 경우에 중재자에 의해 보상이 결정된다. 5) 채찍이나 나무 막대기로 인한 상해의 경우 중재자가 그 보상을 결정한다. 이외에도 상해를 끼친 이는 피해자에게 말 한 마리, 즉 50루블을 보상해야 한다. 6) 자신의 노예를 살인한 주인은 노예를 보상해야 한다. 7) 파르살라코 사람들과 카브다사르드 사람들에게 피의 복수에 대한 완전한 대가는 암소

320 마리인데, 암소 한 마리 가격은 5루블로 계상된다. 지불은 다양한 소유물 - 가축, 무기, 땅 등으로 지불되는데 암소 320마리에 상응하는 가격에 해당된다. 즉 1600 루블 정도이다. 8) 눈에 상해를 입힌 자는 200 루블의 보상금이 필요하다. 9) 머리의 두개골 부분에 상해를 입힌 자는 암소 18마리이다. 이는 9마리 정도의 황소에 해당한다. 황소 1마리는 10 루블 정도이다. 그리고 말로 보상이 가능한데, 말 한 마리는 30루블 정도의 가격으로 계상된다. 10) 가벼운 상해인 경우는 중재자가 결정한다. 11) 손과 발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800루블의 보상금이 필요하다. 12) 손가락이 잘리는 상해의 경우는 암소 7마리이며 약손가락의 경우는 암소 12마리의 보상금이 필요하다. 13) 귀에 대한 상해의 경우에는 하루 동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25마리의 암소 가격에 해당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60루블에 상당하는 무기, 30루블의 말, 10루블에 해당하는 기병대검, 90 루블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소유물을 보상해야 한다.

VI. 결 론

본 논고는 북카프카스 지역의 아다트와 관련된 피의 복수에 관한 내용이다. 본고에서 피의 복수는 ‘복수’ 그 자체의 관점보다는 아다트에 다양한 배상의 형태가 적시되어 있어서 피의 복수는 기본적으로 20세기 이전 북카프카스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관습을 이해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제기한 부분은 아다트에서 규정하는 피의 복수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몇 세기 동안 산악 공동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피의 복수가 종종 발생하였다. 피의 복수에는 어떤 전형성이 있다기보다는, 비전형적인 형태가 더 많은 편이었다. 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 아다트는 일정한 규정을 통해 공동체의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살인,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공동체는 피의 복수를 감행하였다. 피

의 복수는 살인자 등 피해를 입힌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행해졌다. 그러나 살인자에게 징벌을 부과하지 못할 경우, 그의 가족, 친족 혹은 그 가해자가 속한 공동체가 피의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가해자가 전적으로 개인이고, 구체적인 해당자를 직접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그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친족에게 가하는 복수는 수용하기 어려운 행위가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다트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각 공동체는 이러한 민족의 관습과 철학으로 외부의 가능한 공격에서 각각의 마을을 경계하고 보호하였다. 아다트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다트가 재산과 관련된 여러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름대로 아다트는 융통성 있는 시스템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다트를 통해 소송에 관여된 이들의 민족 배경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다트 기능은 비교적 잘 수행되었다. 그래서 북카프카스를 점령한 러시아인들조차도 중재자에게 특정한 사건을 의뢰하기도 했다. 아다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체의 안정성 유지에 있다고 하겠다. 민족적 배경이 다른 경우에도 각 민족들 사이의 분쟁이 나름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체계가 아다트이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중(重) 범죄자를 살해함으로써 분쟁 문제는 종식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본고는 이에 덧붙여 피의 복수는 배상과 보상으로 종결되도록 아다트에 규정되어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살인자, 혹은 상해자의 가족은 피해자 가족과의 화해를 위해 중재자를 통해 배상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재자는 살인의 행위나 상해 등의 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다. 법정 심리가 정식으로 청구된다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마을 주민들이 심리에 관여될 수 있다. 아다트는 상속 문제에도 관여하는데, 경쟁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법률적 심리에 있어 아다트는 광범위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피의 복수는 배상이나 화해로 사건을 일단락 시킬

수는 있지만, 피해자 측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피의 복수는 또 다른 피의 복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다트라는 관습법을 통해 배상과 보상 규정을 적시해놓았던 것이다.

본고는 18세기 이후 19세기까지 북카프카스 사회에 광범위하게 법률적, 비법률적 관습법으로 기능한 아다트를 통해 피의 복수가 어떤 식으로 공동체 내에서 징벌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혹은 배상의 수단을 통해 개인 및 공동체가 보호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일별해보았다. 어떤 사회라도 완벽하게 살인, 혹은 상해, 그리고 다양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전통적 사회에서 법적 체계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서술되었다. 그리고 피의 복수는 개인, 친족 및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법적 규정과 체계, 즉 아다트를 통해 형벌 혹은 화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논고를 통해 명시하였다.

참고문헌

- 정세진. 「북카프카스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전통적 아다트 관습법과 이슬람의 샤리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집』. 28권 1호 (2007). 411-413 쪽.
- 정세진. 「북카프카스 소수민족의 ‘피의 복수’: 용서와 화해의 변증적 방식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7권 1호 (2017). 331-354 쪽.
- Baran, Zeyno, Starr S. Frederick, Cornell, E. Svante. Islamic Radicalism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Implications for the EU. The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 Silk Road Studies Program Paper (July 2006). pp. 45-46.
- Inozemtseva, Elena. “On the Social and Legal Status of Slaves in the North Caucasus.” Iran and the Caucasus. No. 14, 2010.
- Kaprov, Y. Yuri. “Images of Violence in Modern and Recent History of the Peoples of the North Caucasus.” Anthropology & Archeology of Eurasia. Vol. 41, No. 4 (2003). p.14.
- Richmond-Comins, Water. “Legal Pluralism in the Northwest Caucasus: The Role of Sharia Courts.” Religion, State & Society. Vol. 32, No. 1 (March 2004). p. 63.
- Souleimanov, Emil. An Endless War: The Russian-Chechen Conflict in Perspective. Frankfurt am Main : Peter Lang, 2007.
- Souleimanov, Emil. “The Caucasus emirate: genealogy of an islamist insurgency.” Middle east policy. Vol. 18, No. 4 (Winter 2011). p. 161.
- Souleimanov, Emil, Ditrych, Ondrej. “The Internationalisation of the Russian - Chechen Conflict: Myths and Reality.” Europe-Asia Studies. Vol. 60, No. 7 (2008). p. 1217.
- Siukiainen, L. “Shari’ah and Muslim-law culture.”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No. 4 (1999). www.ca-c.org/dataeng/Book/08.syki.shtml.

- Адаты Даге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Закатальского округа. Тифлис, 1899.
- Адаты южно-дагестанских обществ, ССКГ, вып. 7. 1875.
- Ляховский, Александр. Зачарованные свободой. Тайны кавказских войн. Инфо рмация. Анализ. Выводы. Москва: Детективпресс, 2006.
- Бобровников, В. О. Мусульмане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обычай. право. насилие. М осква, 2002.
- Гидатлинские адаты. 1957.
-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ред. А.И.Миллер). Москва: Нов 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7.
- Кавказ: Адаты горских народов. Нальчик: Издательство М. и В. Котляровых, 2010.
- Кавказ: Закон и обычай.Том 1. Источники Кавказского адата. Нальчик: Издательство М. и В. Котляровых, 2011.
- Казиев, Ш. М. Имам Шамиль.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Москва: Молодая Г вардия, 2001.
- Казиев, Ш. М. Карпеев, И.В. Повседневная жизнь горцев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XIX веке. Москва: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2003.
- Керимов, Г.М. Шариат. Закон жизни мусульман. Ответы Шариата на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сти. Москва: Диля, 2007.
- Ковалевский, М.М. Закон и обычай на Кавказе. Нальчик : Полиграфсервис и Т. С. 2011.
- Комаров, А.В. Адаты и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 по ним (материалы для статистики Дагестанской области)//ССКГ. вып.1. 1868.
- Магомедов, Расул. Борьба горце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Шамиля. Махачкала, 1939.
- Магомедов, Р.М. К вопросу о семейной общине в Дагестане, - Труды второй научной сессии Даг. базы АН СССР. 1947.

- Магомедов, Р.М. Адагы Дагестанских горцев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Моск ва, 1960.
- Магомедханов, М.М. Вопросы корреляции адата, шариата и российских законов в Дагестане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IX -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Традиции народов Кавказа в меняющемся мире (сост. Ю.Ю.Карпо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2010.
- Маргошвили, Л. Ю. К вопросу о переселений ваинахов на территорию Грузии Грузино-северокавказск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Тбилиси, 1981.
- Памятники обычного права Дагестана XVII–XIX вв. Москва, 1965.
- Покровский, Н.И. Кавказские войны и имамат Шамиля. Москва: РОССПЭН, 2009.
- Хрестоматия по истории права и государства Дагестана I. Махачкала, 1999.

<Abstract>

A study on Blood Revenge and Adat Law in North Caucasus Region

Jung, Sejin

This article describes the general treatment of the legal system such as various punishments and means of reconciliation specified in the customary law of Adat. In particular, blood revenge in the form of the content of reconciliation through means of reparation was studied. Blood revenge was basically defined in the people of North Caucasus, was mostly recorded in the common customary law of the Caucasus nation. Blood revenge was based on a constant legal ba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uralism of the blood and the customary law of the adat is an important aspect of how the application is done.

This article analyzes the general category of the blood revenge of the North Caucasus, and the record and tradition of the adat in the North Caucasus society. And the contents of the blood revenge, the function of the adat, and the various examples related to the adat court psychology. And this paper has pointed out the content of the blood revenge related to the adat in the North Caucasus region in various compensation form rather than the view of 'plural' itself. Blood revenge is basically a barometer of understanding the common life practice of the North Caucasus society before the 20th century, and emphasized the fact that the blood revenge prescribed by the adat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community.

Key word: North Caucasus, Adat, Blood revenge, Chechen, Dagestan

[논문투고일: 2018. 04. 04]

[심사의뢰일: 2018. 04. 25]

[게재확정일: 2018. 05. 14]